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가족”

2008 제2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일시 | 2008년 4월 2일(수) 10:00~12: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포럼 진행 일정

10:00~10:05

- 개회 및 환영사
- 육동일[대전발전연구원장]

10:05~10:10

- 참석자 소개

10:10~10:30

- 결혼이민자의 인권실태와 증진방안
- 발표자 : 여경순[전국모이세이주여성의집 소장]

10:30~10:50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연계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취지와 세부내용
- 발표자 : 한석연[대전광역시 출입국관리소 관리과장]

10:50~11:00

- coffee break

11:00~11:40

- 종합토론
- 사회 :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1:40

- 폐회

2008 제2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 성 명 | 소 속 | 전 화 번 호 |
|-----|--------------------------|---------------|
| 강귀화 | 대전시 대덕구 주민복지서비스과 여성정책 담당 | 608-6781 |
| 강승수 | 전국결혼이민자연대 대표 | 639-2665 |
| 고덕우 | 대전지방경찰청정보안과 외사계 형사 | 609-2476 |
| 구기창 | 중부경찰서 외사계 | 255-9113 |
| 권형례 |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 600-5058 |
| 김기문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600-2520 |
| 김다남 |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장 | 625-5446 |
| 김동식 |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장 | 628-3404 |
| 김명희 | 유성구종합복지센터관장 | 825-3183 |
| 김미애 | 대전모이세 소장 | 639-2665 |
| 김봉구 |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소장 | 631-6242 |
| 김소연 | 대전모이세 사회복지사 | 639-2665 |
| 김시권 | 대전모이세 | 639-2665 |
| 김애진 | 대전 이주여성 인권센터 교육부장 | 222-6242 |
| 김응숙 | 대전시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여성정책담당 | 250-1342 |
| 김정애 | 대전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 532-1610 |
| 김정은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821-6471 |
| 김종봉 | 결혼정보회사 필립 대표 | 1544-5232 |
| 김준구 | 대전 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부장 | 222-6242 |
| 김학원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600-5014 |
| 김현숙 | 대덕구의회 의원 | 608-5051 |
| 김홍혜 |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대표 | 222-7042 |
| 맹상학 | 대전모이세 대표 | 639-2665 |
| 박노동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471-5643 |
| 서 란 | 대전모이세 사무원 | 639-2665 |
| 손정애 | 사회복지사 | (041)856-7071 |
| 손진분 |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600-2525 |

| 성 명 | 소 속 | 전 화 번 호 |
|-----|---------------------------|----------|
| 송영희 | 대전시 중구청 복지과 여성아동담당 | 606-6431 |
| 여경순 | 모이세이주여성의집 소장 | 636-2036 |
| 엄은숙 |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상담원 | 222-7042 |
| 염성환 | 대전둔산경찰서 외사계 | 476-3007 |
| 육동일 | 대전발전연구원장 | 471-3620 |
| 이나영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 480-7611 |
| 이난희 | 결혼정보회사 혼담 대표 | 484-6070 |
| 이성순 | 목원대학교 이주여성연구소 | 829-7288 |
| 이연숙 | 대전시 중구 복지과 | 606-6432 |
| 이 웅 | 대전서부경찰서 외사계 | 587-1113 |
| 임대혁 | 대전동부경찰서 외사계 | 632-2132 |
| 임영순 |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 637-1366 |
| 장광진 |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 257-1663 |
| 장금식 | 대전시 새마을부녀회장 | 471-2902 |
| 정경태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 471-5643 |
| 정경희 | 대전시 유성구 주민복지서비스과 | 611-2437 |
| 정금희 |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252-9989 |
| 정귀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 252-7208 |
| 정승호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복지 담당 | 600-3551 |
| 정용길 | 대전시 동구 주민생활복지과 | 250-1342 |
| 조강숙 | 디트뉴스 리포터 | 471-8114 |
| 조영호 | 중부경찰서 외사계 | 255-9113 |
| 조정은 | 대전시 교육청(방과후 학교팀) | 480-7609 |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부 책임연구원 | 471-5696 |
| 차정자 | 대전시 보육시설연합회장, 대전시립어린이집 원장 | 521-0837 |
| 최영조 | (사)국제교류문화원 | 254-7793 |
| 한석연 | 대전출입국관리소 관리과장 | 254-8811 |
| 함은미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 471-5696 |

2008 제2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운영위원

| 성 명 | 소 속 | 전 화 번 호 |
|-----|----------------------------|----------|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471-5696 |
| 박노동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471-5643 |
| 맹상학 | 대전 모이세 대표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 639-2665 |

2008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전지역의 가족현상을 파악하고,
- 가족의 가치 확대와 가족의 문제점해결을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며,
-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끌어내고,
- 건강한 가정과 미래경쟁력을 가진 대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시민운동 (New City Mov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포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1) 대전가족공동체포럼

- ① 목적 : 대전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 ② 방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전문가 및 단체 (교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기업, 종교인 등)
시민 : 시의회 및 가족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 ③ 효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가족정책수립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문화 확산
- ④ 시기 : 7회 예정
- ⑤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협조: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 가족관련행사

- ① 목적 :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대전시민의 자발적 참여운동
- ② 방법 : -캠페인 및 슬로건 : 지속성행사
 - 목적 : 가족이미지, 가정철학 찾기(발견하기)
 - 방법 : 캠페인/슬로건 <-언론, 기업, 민간추진단체 등등
 - 효과 : 캠페인에 의한 언론성->시민계몽 및 교육효과-가족슬로건(표어) 만들기 :

이젠 “가족”입니다 와 관련된 슬로건 만들기 (공모/컨설팅)

-가족코칭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가족의 문제발견과 해결
- 방법 : 전문가 활용(라이프코치, 가족코치 활용)

-가족에 관심 있는 시민 모으기 운동

- 목적 : 대전시민의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유도
- 방법 : 자발적인 가족운동지원/ 단체중심의 운동지원

-특별 행사(주제/ 월별/ 주체/대상가족 등등)

- 방법 : 대전시 주관 가족 프로그램 진행
기업추진 가족 프로그램 지원(대전시와 공동 진행)
민간단체추진 가족 프로그램지원(대전시와 공동 진행)

③ 시기 : 2회 예정

④ 주관 :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 민간단체, 기업 등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실태와
증진방안

2008. 3.

모이세이주여성의집
이주·여성인권연대

결혼이민자의 인권실태와 증진방안

여 경 순(모이세이주여성의집, 이주·여성인권연대 소장)

shantiyeo@yahoo.co.kr

들어가며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하는 이주여성은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남성과 결혼 하는 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추세의 원인이 한국인 한 개인의 문제를 아닌,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정부는 2006년 4월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등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종합 대책에는 7가지의 정책영역을 나누어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다. 7가지의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②안정적인 체류지원 ③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④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⑤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⑥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⑦추진체계 구축

정책영역의 제목만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책 내용에서조차도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부인” 또는 “ 한국 국적 아이의 어머니”로서만 그녀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 성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입국하는 과정과 입국 후 벌어지는 인권침해 실태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체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책에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염려스럽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많은 단체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현실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여성들이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단위가 늘어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이 이주여성 인간으로서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입국하는 과정, 자신의 의지로서는 해결 할 수 없는 체류안정 문제,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정부 주도적이고 편의적인 담론들, 사회복지 관련법 수급권리 제한,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종사자들의 차별적인 인식 수준, 자녀들에 대한 편견 등을 볼 때면 답답함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글에서 한국 내 결혼 이주자들의 입국과정과 결혼과정 또는 해소 후 한국 내 체류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결혼 이주자 입국과정의 인권침해 상황(베트남 중개과정 중심으로)

후인마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제 혼인 규제가 강화되어 2007년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은 6,611건으로 2006년 10,131건 보다 3,520건(34.7%)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7년간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수는 2001년 134명보다 급증한 추세이다.

한국과 베트남을 매개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다단계의 중개구조는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결혼당사자인 여성과 남성을 억압하는 데 필연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침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

▷ 인권 침해적 광고 후불제, 신부 보증제, 등등

2) 부정확한 정보 제공 & 거짓 정보 제공

▷ 조악한 통역, 의도적 정보누락, 다단계 중개업의 필연

▷ 알코올 중독, 범죄사실, 도박중독, 정신지체, 정신병, 직업, 학력, 결혼경력 등

3)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상실

▷ 합숙기간 중 생활비 부채화, 강제적 합방, 여성의 거부권 부재,

▷ 불법적인 계약서 체결

사례)베트남 여성

합숙을 하면서 선을 보는 동안 중간에서 포기하겠다고 하면 밥값을 베트남 중개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 달이면 300달러정도 내라고 한다. (베트남 중개업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기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한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밥값을 내기도 힘들고 해서 눈 딱 감고 결혼 했다.

4) 과도한 이윤 착취 구조

- ▷ ‘묻지마’성혼 행태 가속화
- ▷ 사후관리 면목의 인권침해 행위
- ▷ 베트남 현지 업체의 금전 착취 구조의 한 원인으로 작용

사례) 한국인 중개업자

요즘 한국 남성들에게 1100만원을 받는다, 이중에서 320-370만원 정도를 베트남 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는 700만 원 정도는 한국 업자가 몫이다. 물론 이 돈에는 남편의 비행기 값이 포함되고, 베트남 측에 보낸 돈에는 베트남에서 소용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 측 몫 중에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커플 메니저와 함께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200-300만원 정도 돌아가게 된다.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하려고 한다. 베트남 지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서류장난이라고 해서, 멀쩡한 아가씨 호적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측에 돈을 더 요구하기도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맹점을 노려 여러 가지 "서류장난"을 치기도 한다.

5) 해당국내 탈법 행위

- ▷ 성매매관련법 위반
- ▷ 급행료 등 뇌물
- ▷ 허위혼인 증명서

6)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

- ▷ 집단 맞선 과정
- ▷ 인신 구속적 합숙생활
- ▷ 강제적 합방
- ▷ 처녀막 재생수술, 임신경력 확인 검사

사례) 베트남 여성

호치민에서 선을 보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 남성이 한 명이 왔는데 여성 400명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선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고 호텔 8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경찰이 단속 나오면 각자 알아서 도망가야 한다. 잡히면 벌금 50만동 이다.(성매매로) 몸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다. 집에서 30만동 가지고 호치민으로 올라왔다. 선보러 갈 때 커튼으로 창문을 가린 10인용 봉고차에 30~4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 곳 저곳에서 선을 보러 다닌다. 돌아올 때는 차비는 내가 내야 한다. 이것저것 돈들이 들기 때문에 팔찌, 목걸이 주인아줌마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한다.

7) 북부 출신 여성(하이퐁 중심)을 대상으로 한 급행료 요구 증가(1천 달러-2천 달러)

한국에 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 출신이지만, 최근 2005년 후반부터는 북부지역 하이퐁 주에서 오는 이주여성의 수가 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의 경우는 베트남인 중개업자들에게 1천 달러씩 은행에서 빌려서 중개료를 지급하고 오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고, 친정 부모들은 이 돈을 6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각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은 모른다. 이로 인해 한국 입국 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입국 후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상황

1) 사후 관리 면목의 한국 입국 후 업체들의 강압적인 행태들

- ▷ 여권 및 외국은 등록증 압류
- ▷ 동국적자들과 연락 못하게 하기
- ▷ "이혼을 원하면 남성이 지불한 돈을 내고 가라"
- ▷ 이혼을 하면 그냥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 ▷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조건 참아라"
- ▷ 강제이혼 후 베트남 돌려보낸 경우

2) 다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상황들

- ▷ 여권 및 외국은 등록증 압류
- ▷ 일방적 문화 강요
- ▷ 외출제한

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의 필요

2005년 2월1일, 열린 우리당 김춘진의원 대표 발의로 국제결혼 중개업 허가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중개업체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이후 2007년 11월 결혼중개업 관리 법안이 등록제로 통과되었고, 이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중개업 과정 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내용의 계약서와 신상정보를 여성에게 공개하는 등의 몇 가지 내용을 의무화 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국제결혼 중개업이 문제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국제결혼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윤리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은 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결혼으로 꾸러지는 한가정이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당사자의 삶의 질이나 행복, 자녀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성사에만 급급한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초스피드식 국제결혼은 그야말로 선남선녀의 결혼중매의 고유한 의미의 훼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남성들의 약혼자 비자의 발급 건수를 제한하거나 남성들의 정보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력한 법이 2006년 1월에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도 등록제만으로는 현재의 국제결혼중개업의 비도덕적인 관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 진다.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을 두는 제도개선과 함께 국제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근본적인 문제(육아, 양성평등, 취업, 농업,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소외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다문화 및 인권교육의 필요

법과 제도상 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교육에서 어릴 때부터 차이를 인정하고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국적법 제6조 3호 와 4호 조항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 6조 혼인귀화가 가능한 범위(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조항)

3.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4.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정부는 2004년 1월에 국적법 제6조의 3호와 4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중에서 해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호 조항인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 해석을 한다면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없으면 되는 것인데, 현재 법무부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이주여성, 본인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법무부의 이러한 방식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로 보여 진다. 일선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란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일선 민원인들에게 이혼판결문을 반드시 요구하는 등 법무부 지침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반 인권적 조치로 보여 진다. 즉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나, 언어적, 정서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은 한국을 떠나거나 또는 남편의 폭력에 남거나, 또는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단 3가지 선택권만 이들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에게 남는다.

결혼이주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현재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이주민 폭력피해 여성 조사관 제도등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법무부 자체 내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법조문대로, 이주여성 자신에게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국적신청은 자유롭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귀화허가를 할 것인가 여부는 법무부에서 적극적 실태 조사등과 같은 일정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검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4) 친권이 없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합법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에 대한 친권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아이는 한국 사람이 키워야 한다는 인식과 아이는 좀 더 잘사는 나라에서 키우야 한다는 등의 일반인의 인식으로 이주여성들이 재판을 통한 친권 획득은 현실적으로 이들 여성에게는 큰 모험이다. 결혼이민자 본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이 아이와 함께 도피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고, 또는 여력이 되거나 출국이 가능한 상황에는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혼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허락 받더라도 한국 내에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체류가 아직까지는 허락되어 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모든 이주여성들은 이혼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최소한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 장기적인 체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5) 혼인의 진정성과 영주자격신청과 국적 신청에 남편동행 규정

주변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에서 생활이 5년 이상이 되어도, 영주 자격 또는 국적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에도 없는 영주자격신청과 국적신청 시 남편을 동행하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법무부는 혼인관계를 진정성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으로 남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영주자격도 국적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성은 영주자격도 국적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관례는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인권침해 요인이 다분한 것이며 혼인의 진정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한국인 배우자의 심성’에 좌우되는 국가의 정책으로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못하며, 이주여성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 진다.

이주여성과 그 남편의 혼인진정성이 이주여성의 영주자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법무부는 이에 합당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6)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협의이혼과 관련된 보조 장치 필요

최근 상담 중에는 협의 이혼 후에 찾아오는 이주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은 협의이혼은 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의 강요와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협의이혼이라 진정한 의미에 협의이혼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법정에서의 통역을 대동한 협의이혼만으로 이들 여성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주여성의 협의이혼의 경우는, 협의 이혼 전 통역을 동석한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강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통해 한국 법제도 현실에 어두운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례) 22세의 임신 2개월이었던 , 베트남 여성 C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 일주일 동안 외부의 접촉을 차단당한 후 낙태와 이혼을 강요당하였고, 상황이 힘들었던 C씨는 낙태를 한 다음날 협의 이혼을 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어 통역은 중개업자가 섭외하였다고 한다.

사례) 19세의 베트남 여성 D씨는 한국에 입국한지 4일째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이혼할 것을 강요받는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 했으나 쉽지 않았다. 이 여성은 다른 베트남 여성들과의 의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 채 한국 입국 후 10여일 만에 합의 이혼을 하였다.

7) 합법체류자격을 본의 아니게 상실한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자의 체류자격보장

합법체류자격을 본의 아니게 상실한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자 - 본의 아니게 혼인이 해지되고, 출입국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또 다시 본의 아니게(귀국비용이 없어서, 배우자와 중개자에게 방임이 되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일방적인 출국통지를 받아서 등)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여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제도 속에서는 보호시설을 감독하는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지 않다.

국제결혼방식의 특성상 중개과정에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인이 즉시 귀국을 원할 경우에는 ‘귀국지

원비'제공을 하고 이후에 중개업자나 남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봐야 한다. 만약, 공적 재정에 의한 귀국지원비의 지원이 어렵다면, 중개과정에서의 피해 여성들에게 귀국비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출입국관리 규정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8)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수제(한국어, 기본적 소양교육)'과정 의무화 논의 필요

최근 법무부에서는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과정을 만들어 이를 이수할 시에는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마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사회통합 관련 교육에 대한 예들이 그 배경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주 역사와 그 내용,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과 사회권에 대한 장치와 관련 논의의 성숙도와 역사가 전혀 다른 유럽 등의 사례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자의 상황에 적용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불안정한 위치, 체류의 불안정성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 내지는 더 나아가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기간과의 연계 논의**는, 이주여성과 개별 가족의 선택의 자율권을 침해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이주여성에게 형평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선까지 그리고 어떤 정책영역이 여성들에 필요한 부분인지 등에 대한 여러 단위에서 풍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9) 사회복지제도의 차별배제

현재 한국 내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결혼이주자가 그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이며, 이마저도 '한국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그 적용범위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또 그 '국민'을 해석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자가 한국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인이 현재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주변화 되고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편입되는 계층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는 집단적,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는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2006년, 설동훈 외) 연구에서도 제언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기초생활보장, 직업상담, 교육, 건강권 등이 한국 국적자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5곳의 이주여성 전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신고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방지법의 개정으로 이주여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의 수급대상자의 규정에 의해,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이 입소할 경우 생활급여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국적취득 전의 이주 여성은 자녀가 있건 없건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과 조치로 국적취득전인 자녀가 없는 여성은 사회복지 운영규정이나 여성인권관련 지침을 바꾸어서 생활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며

말이 낫 설고, 모든 생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한 개인이 모든 많이 다른 한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있어서는 많은 이주 여성 가족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그리고 가족구성원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의식과 내면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의식 등의 커다란 벽의 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존중 받는 한명 한명의 개인으로 자립 매김 하는데, 개인의 노력 또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인을 제공한 한국사회가 함께 짊어 져야 할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

2008. 3.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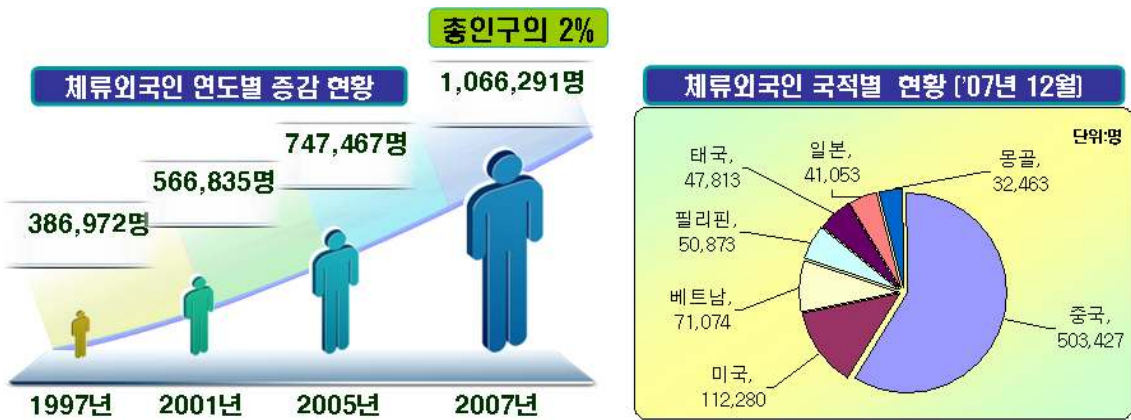
| | | |
|-------------|---------------------------------|----|
| I. | 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 | 1 |
| II.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배경 | 2 |
| III.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요 | 5 |
| IV.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계획 | 6 |
| V.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세부 내용 | 7 |
| | □ 이수제 구성체계 | 7 |
| | □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방법 | 8 |
| | □ 이수제 과정 구성 | 10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종합평가 | 13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절차 | 14 |
| | □ 운영기관 지정 절차 | 16 |
| | □ 이수신청자 학적 관리 | 18 |
| | □ 강사 및 과정인정 등 | 19 |

I. 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

□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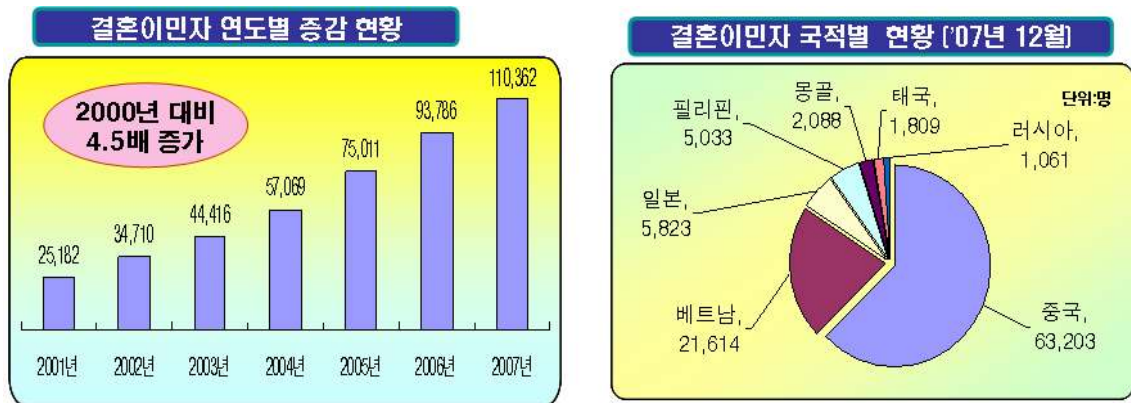
- 2007년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06만 여명으로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2% 차지

※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 증가와 국민 구성의 다양화

- 2006년 기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며, 200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의 수는 11만여 명 (2000년 대비 약 4.5배 증가)
- 후천적 국적취득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128개국 7만여 명('90년 55개국 ⇒ '07년 12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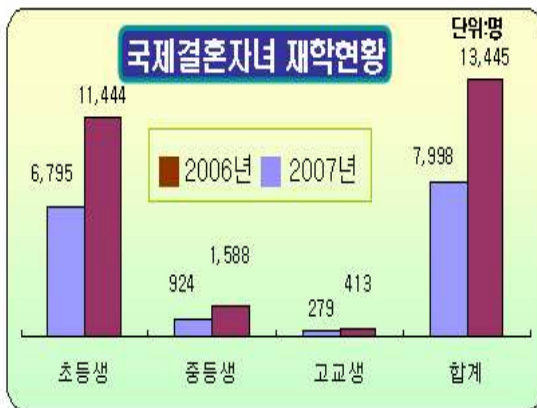
I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배경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사회부적응 심화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우리사회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 곤란
- 이민자와 이민 2세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전락, 사회비용 발생



- 이민자 2세 등 다양한 언어, 문화 배경을 지닌 인적 자원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 상존



'07년 현재 13,445명
1년전 7,998명 대비 5,400명 증가



이민자 2세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외모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의 상태

□ 국적취득시 기본소양 측정 곤란

- 일반귀화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국적취득을 하고 있으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검증하는데 한계

-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20세 이상 성년으로 생계유지능력이 갖추고 있는 자로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귀화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치루고 있음
 - 다만 귀화신청자 중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국내 출생자로 초·중·고 또는 대학을 나온 자, 국민과 결혼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음
 - 일반귀화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필기시험 등 귀화적격심사를 통해 최소한 국어능력과 기본소양 등을 평가받아야 하나 일반귀화자의 경우에도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데 한계**
 -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어 2년 이상 국내체류 시에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 우리사회이해 등 기본소양이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 2세까지 학업·취업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 '07. 9월 우리부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성적이 47.1점(합격률 42%)으로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성적이 28.6점(합격률18.5%)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7명은 전혀 시험을 보지 못했음)
-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후 귀화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어 및 문화적 배경지식 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07.5.8. 한겨레신문)

□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 우리사회 제도, 생활, 문화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부재

□ 이민자 적응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참여율이 저조

- 부처별로 이민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민자들의 참여와 관심 저조

※ 전체 등록외국인의 1.6%,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의 10.5%에 해당되는 재한외국인이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

☞ 이에 따라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을 검토

II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한국어, 우리사회이해 등 정착지원 시책을 표준화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함

【해외 도입사례】

해외 사례

● 독일

| 독일어 구사능력 | 이수 시간 |
|----------|------------|
| 상급 | 100 시간 |
| 중급 | 101~200 시간 |
| 하급 | 201~300 시간 |
| 기초 | 301~600 시간 |

※ 최근 사회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600 시간에서 800 시간으로 증대 의견 제기
 ☞ 독일어 과정을 마치면 독일사회 오리엔테이션 과정 30시간 이수

● 프랑스

- 프랑스어 최대 400 시간 및 시민교육 30 시간으로 구분

● 네덜란드

- 12개월 통합강좌(네덜란드어 600 시간, 시민교육 및 직업준비교육)

● 덴마크

- 3단계 코스로 구분(언어교육은 물론 사회, 문화 등 교육을 포괄)

| 덴마크 코스 | 대상 및 level 구분 |
|--------|--|
| 3단계 | 교육수준이 일정 수준인 이민자 필기(module 1~6), 구술(module 1~6) |
| 2단계 |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이민자 필기(module 1~6), 구술(module 1~6) |
| 1단계 | 자신의 모국어도 모르는 이민자 필기(module 1~6), 구술(module 1~6) |

I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계획

□ 국적취득과 연계

○ 1단계 : '09.1.1. 이후

- 내용 : 귀화필기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선택
- 대상 : '09.1.1. 이후 모든 귀화신청자(국민의 배우자가 우선대상)
- 참고사항 : 기존의 귀화필기시험 전면개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과정 내용 및 교재를 기준으로 시험을 전문화

○ 2단계 : '10.1.1. 이후

- 내용 : 귀화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
- 대상 : '10.1.1.이후 모든 귀화신청자

□ 영주권 등과 연계

- 영주자격 취득 희망자에게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영주자격 부여를 점진적으로 검토

※ 영주자격의 경우 국적취득보다 완화된 이수과정, 시간 적용

□ 기타 난민인정, 장기체류자 등에게도 연계

-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적응이 필요한 난민인정 대상자, 장기체류자에게도 적용 또는 자격 변경 시 연계 적용

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세부 내용

□ 이수제 구성 체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구성

①기본소양 사전평가 + ②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 + ③종합평가

※ 결혼이민자 및 기타 이수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준구성임

2. 기본소양 사전평가

- 신청자의 한국어실력, 우리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측정
- 이수대상 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 배정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

※ 세부사항은 뒤의 p10 “이수제 과정구성” 참고

4. 종합평가

-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통해 배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충족시킨 이수자를 대상으로 최종평가
- 전문평가시험임 KINAT(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을 현재 개발 중임
- ※ 성적불량자에 대하여는 이수과정 및 시간 재배정후 재이수

□ 기본소양 사전 평가 및 방법

1. 기본소양 사전평가의 의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신청자의 기본실력 측정
- 실력에 맞는 프로그램 레벨 및 이수시간 배정
- ※ 사전평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사무소 및 한국이주민재단이 공동수행

2. 시험구성 및 평가 방법

- 전화인터뷰를 통한 구술시험 + 필기시험 혼합방식
 - 전용전화를 통해 평가위원과 대화식 인터뷰, 제공된 지문에 대한 읽기 등을 통해 한국어 및 기본소양 측정
 - 제공된 지문에서 제시된 주제에 맞는 쓰기 측정
- 구술시험은 제시된 짧은 지문읽기 5문항, 제시된 자료를 통한 대화식 인터뷰 2가지 상황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5분
 - 읽기 지문은 총 10개, 인터뷰 상황은 총 4개를 제시하며 이중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읽기 지문 5개, 인터뷰 상황 2개를 선택하여 시험실시
- 필기시험은 제시된 상황에 대한 짧은 작문(쓰기) 3문제로 하며 시험시간은 5분
 - 상황은 총 6개를 제시하며 이중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3개를 선택하여 시험실시

3. 세부내용

- 각 사무소에 전용공간 및 전화 설치
 - 사무소 조용한 장소에 밀폐된 전용책상 및 전화설치
- 한국이주민재단내에 전화인터뷰 공간 및 평가위원 배치
 - 재단 내에 전용전화 및 자동녹음장치, 평가위원 배치
- 시험용 지문은 A4 1장 이내로 재단에서 작성하여 매일 재단 홈페이지에 보안등재, 각 사무소 사회통합담당관이 보안접속 후 출력사용

- 사무소 사회통합담당관은 신청자 확인 후 재단 전용전화로 접속하여 시험실시
- 각 사무소에서는 시험지 회수 후 스캔하여 일단위로 재단 홈페이지에 보안등재하고 원본은 사무실에 보안보관
- 재단에서는 전화 인터뷰 자동저장 후 필기시험지와 함께 채점하여 해당 사무소 및 신청자에게 점수 및 레벨, 이수시간 통보
 - ※ 점수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사전평가 접수대비 이수과정은 다음 페이지 참고 >

□ 이수제 과정 구성

| 이수단계 | | SI-0 | SI-1 | SI-2 | SI-3 | SI-4 | SI-5 | SI-6 | SI-7 | SI-8 |
|---------|-----------------|--------|--------------|--------------|--------------|-------|-------|-------|-------|--------|
| 과 목 | 한국어 | 한국어0 | 한국어1 | 한국어2 | 한국어3 | 한국어4 | 한국어5 | 한국어6 | 한국어7 | - |
| | 이수시간 (단위:시간)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 우리사회이해 | - | 기초생활 현장방문 | 기초생활 현장체험 | 기초생활 현장참여 | - | - | - | - | 일반강좌 |
| | 이수시간 (단위:시간) | - | 10 | 10 | 10 | - | - | - | - | 20 |
| | 이수기간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2개월 |
| 사전평가 점수 |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79 | 80~100 |
| 대상자 | | 결혼이민자 | | | | | | | | |
| | | 일반 이수자 | | | | | | | | 공통 |

※ 결혼이민 이수자는 SI-0 ~ SI-3 이후 SI-8로 감.

일반 이수자는 SI-0 ~ SI-8 단계로 감

(단, 일반 이수자중 SI-4 ~ SI-7 까지는 SI-8을 동시이수 가능)

※ SI는 Social Integration의 약자임.

1. 과정구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SI-0」 ~ 「SI-8」 까지 총 9단계로 구성
- 과정별 이수기간은 「SI-0」 ~ 「SI-7」 까지는 각 단계마다 6개월 씩으로 하고 「SI-8」 은 2개월로 함

2. 단계별 특징

- 한국어 과정 : 최하위 기초부터 고급까지 8단계로 세분화
 - 『한국어 0』 : <기초>
 - 최하위 기초 한국어 - 한국어로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상자
 - 『한국어 1』 ~ 『한국어 2』 : <초급>
 - 입문수준의 한국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단어정도 이해, 제한적으로 단순/반복적 용어의 의사소통 수준의 대상자

- 『한국어 3』 ~ 『한국어 4』 : <중급>
 - 표준어 이해 -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 등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 가능수준
- 『한국어 5』 ~ 『한국어 6』 : <상급>
 -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등 수준 높은 의사소통
- 『한국어 7』 : <고급>
 - 다양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

○ **우리사회이해 과정** : 현장중심 학습에 일반강좌를 가미함

- 『기초생활 현장방문』
 - 한국어 사용이 거의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예시 : 시장탐방, 대중교통 이용, 관공서 방문, 병원/약국 등 의료시스템 방문, 다양한 업종 방문 등
- 『기초생활 현장체험』
 - 중급수준의 한국어 구사자가 직업현장, 지역사회제도,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예시 : 업종별 직장체험, 주말 나들이 장소 찾기, 지역사회 각종 공동체 체험, 생활안전시설 체험 등
- 『기초생활 현장참여』
 - 중급이상의 한국어 구사자가 주민으로서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예시 : 반사회, 각종 봉사활동, 각종 설명회 참석 등
- 『일반강좌』
 - 우리사회이해 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적 심도 있는 학습

※ 「우리사회이해」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질 사항들

-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 다른 문화 이해
- 한국의 역사
- 국내 체류와 국적
- 직업훈련과 노동
- 자녀교육과 학교체계
- 건강과 의료
- 인권과 복지
- 행정제도
- 일상생활 관련법률
- 주거복지와 부동산
- 한국어 능력향상 정보
- 한국의 문화와 종교
- 정치형태와 민주주의
- 한글의 유래와 특성
- 평화와 공존
-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 관광과 여가문화
- 한국의 자연과 생태
- 공동생활

3. 참고사항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이수자의 경우 SI-0부터 SI-3까지 이수 후 SI-8단계로 진입
- 기타 일반 이수자의 경우 SI-0부터 SI-8까지 순차적으로 진입
- SI-4부터 SI-7에 해당되는 이수자에 한하여 SI-8을 동시에 이수가능하며 그 외의 이수자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SI-8을 이수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각 이수자에 대하여 한국어 및 우리사회이해 과정을 각각 주당 3시간 이하로 편성을 하여야 하며, 이수자가 이를 초과 이수하여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언어 및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특성상 이해와 숙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주기를 감안, 단기간에 집중하여 이수시간만을 채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 ☞ 다문화이해 증진과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이수자의 배우자 및 가족, 직장동료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고, 그 참여도에 따라 해당 이수자에게 일정 이수시간을 인정할 계획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종합 평가

1. 기본방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 과정에 대한 성취도(이수실적)를 최종 측정
-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과정 포함

2. 평가 방법

- 시험제도 연구/개발 중
- CBT 기반의 시험방식으로 한국어와 우리사회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3. KINAT(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 KINAT(Korea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 향후 현행 귀화필기시험을 KINAT으로 대체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이민 귀화 대상 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도, 기본소양함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시험으로 확대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개발단계이므로 개발안 확정 후 설명 예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절차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신청대상자

- 기본 : 결혼이민자(국민인 남편 등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도 허용검토)
 - '09.1.1. 이후 귀화신청 결혼이민자의 경우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우선 신청대상임
- 향후 대상자 확대
 - '10.1.1. 이후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
 - 기타 영주권신청자, 유학생,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의무화 도입 예정

2. 신청절차

| | |
|------|--|
| 신청 | • 신청자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이수신청 |
| 사전평가 | • 신청접수 후 관할 출입국에서 사전평가 실시 • 레벨 및 이수시간 배정, 가까운 운영기관 안내 |
| 등록 | • 가까운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이수신청자 등록 |
| 이수 | • 배정받은 과정 및 시간 이수 및 이수확인서 발급 |
| 평가 | • 이수 후 최종 평가 및 점수표 발급 |
| 귀화접수 | • 이수확인서 및 점수표를 구비하여 귀화접수 |

- 운영기관 추천
 - 관할 사무소에서는 기본소양 사전평가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자의 거주지, 사전평가 점수 등에 부합한 운영기관을 신청자에게 추천하여야 함
 - ※ 추천을 할 때에는 접수한 신청서에 사전평가 점수 및 추천운영기관을 기재하여 사본 2부를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 등록 및 과정배정

- 관할 사무소에서 운영기관 추천을 받은 신청자는 본인이 원하는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자 등록을 하고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사전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이수 과정에 분반 배정

※ 이수도중 운영기관 변경

- 신청자의 체류지 변경 등으로 부득이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변경되는 운영기관에 변경 신청
- 새롭게 변경된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자의 과거 운영기관에 이를 통보
- 통보받은 과거 운영기관은 3일 이내에 신청자의 학적관련 일체 서류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송부

※ 이수도중 장기결석 신청자 처리

- 신청자가 이수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의 사유로 장기간 결석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수정지” 신청
- “이수정지” 신청자가 그 사유가 종료되어 다시 이수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과거에 배정받은 이수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이수사항을 계속 승계 받을 수 있음
- 단, 무단으로 장기결석(1개월 이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이수사항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 운영기관 지정 절차

1. 운영기관

- 지정절차 : 신청 → 심사 → 법무부장관의 지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각 프로그램을 운영
- 기타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를 위한 각종 행사주관

2. 운영기관 지정 세부절차

| | |
|------|---|
| 신청 | • 관할 출입국에 지정 신청 |
| 사실확인 | • 신청접수 출입국에서 신청사실 확인 • 조건 미비 시 보완요구(10일 이내 보완) |
| 보고 | • 각 소장은 사실확인 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보고 |
| 결정 | • 법무부장관은 지정여부 결정 |
| 지정 | • 지정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3. 세부내용

- 운영기관 지정기준 : p17 표 참고
-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설명서 및 일정표
 - 강사의 자격증, 수료증 등 자격 입증서류
 -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운영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입증서류
 - 운영계획서(별도 양식배포)

4. 지정취소

- 운영기관 지정 취소기준 : 별도 공고예정
-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이 취소된 운영기관은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재지정 보류
 - 지정이 취소된 운영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재지정 보류

【운영기관 지정기준】

| 【운영기관 지정기준】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 |
| - 공통 사항 | 한국어와 우리사회이해 과정 동시 운영(필수) 기본 교육계획 수립(필수) 1인 이상 충분한 강사의 상시 확보(필수) 지정된 교재의 사용(필수) |
| - 한국어 과정 | 주당 최소 12시간이상 편성 |
| - 우리사회이해 과정 | 주당 최소 4시간이상 편성 한국문화, 요리강습 등 참여프로그램 교육 계획 수립 과정 개설시 1인 이상 충분한 강사의 수시 확보 |
| ■ 운영기관 시설 | |
| - 교육시설 환경 |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 확보(필수)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필수) 교육시설 환경의 청결도 유지 과정 이수자의 유아를 위한 수유 또는 휴게 공간 마련 |
| - 교육시설 안전 | 재해, 재난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필수)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대처방안 마련 |
| - 교육시설 운영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원거리 거주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
| - 학사관리 |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필수) |

□ 이수신청자 학적 관리

1. 기본적 학적사항

- 운영기관에서 이수신청자에 대한 신청자 등록, 출결관리, 성적 관리 등 종합적 이수사항 관리

2. 세부내용

- 신청자 등록
 - 규정양식에 의거 신청자 등록카드를 개별로 작성/비치
- 신청자 대장 관리
 - 규정양식에 의거 신청자 대장 작성/비치
- 분기별 종합 학적관리 분석
 - 규정양식에 의거 매 분기별 종합 학적관리 분석 후 매 분기종료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에 통보
- 이수확인서 발급
 - 배정된 과정 및 시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규정양식에 따른 이수확인서 발급

※ '08년 하반기에 학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이므로 '0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학적관리 가능

□ 강사 및 과정인정 등

1. 강사

- **한국어강사** : 해당 운영기관의 기존 한국어강사에 대한 기본 자격 및 경력 등 고려하여 허용
- **우리사회이해 강사** : 해당 운영기관의 기존 강사 또는 일반인 중 법무부와 한국이주민재단에서 개발한 「우리사회이해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수강료 일부지원)
 - ※ 「우리사회이해 강사」 양성의 경우 '08년도에는 법무연수원에서 4회, 각 지역 거점대학(전국 20개)에서 연간 2회씩 과정 개설 예정이며, 수강료중 수강생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해당 대학에 지원
 - ※ 향후 우리사회이해 강사 부분 중 다문화이해를 보강하여 별도과정 개설 예정
- 강사의 보수 : 소속 운영기관 자체조달
 - ※ '09년부터는 운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중임

2. 과정 및 교재

- **한국어과정** : 기존 각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과정에 대하여 소정의 검증을 거쳐 과정 및 레벨 지정
- **한국어 교재** : 기존 각 운영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에 대하여 소정의 검증을 거쳐 지정
- **우리사회이해 과정** : 법무부와 한국이주민재단에서 개발한 “우리사회이해 과정”으로 일원화
- **우리사회이해 교재** : 한국이주민재단에서 발행·보급하는 교재로 일원화(유료보급 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목 차

- I 다문화사회로의 환경 변화
- I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배경
- II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요
- I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계획
- 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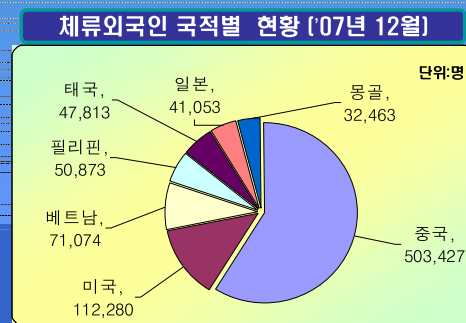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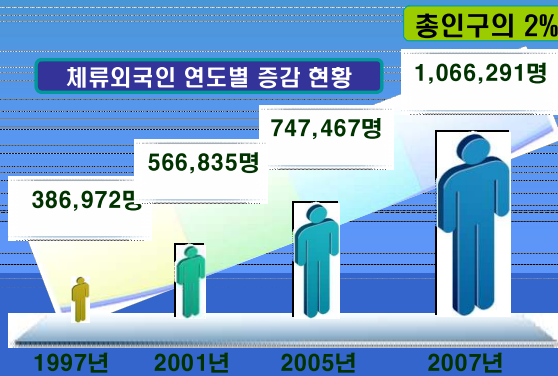
I. 다문화사회로의 환경 변화



체류외국인 증가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 10년 전 38만여 명 => '07년 말 106만여 명으로 급증
- 197개 국적의 외국인 국내 거주, 2020년 총인구의 5% 차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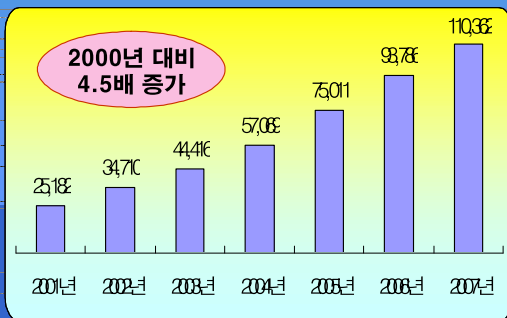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외국인 증가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국민 구성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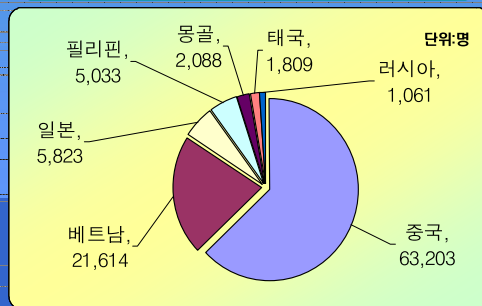
☑ '06년 기준 8쌍 중 1쌍 국제결혼, '07년말 현재 11만여 명

☑ 후천적 국적취득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128개국, 7만여 명
- '90년 55개국 => '07년 128개국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현황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07년 12월)



I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배경



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사회부적응 심화

2

국적취득시 기본소양 측정 곤란

3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시스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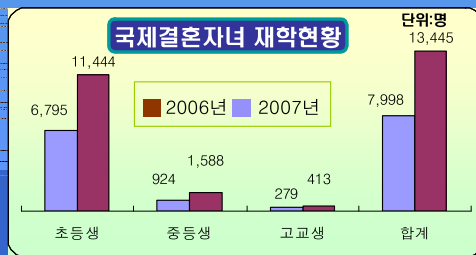
1

결혼이민자 · 귀화자 사회부적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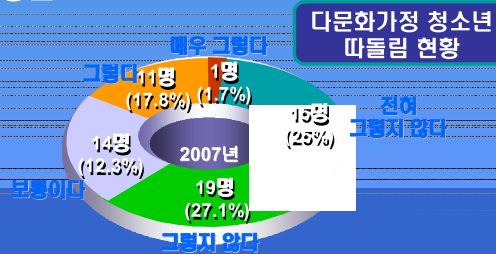
이민자와 이민자 2세 등의 사회부적응 문제



이민자 2세 등 다양한 언어, 문화 배경을 지닌 인적 자원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 상존



※ '07년 현재 13,445명
1년전 7,998명 대비 5,400명 증가



※ 이민자 2세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외모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이 발생



2

국적취득시 기본소양 측정 곤란

현행 국적취득 절차

- 일반귀화자의 국적 취득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 필기시험 면제
 - 면접은 실태조사로 대체하되, 특이한 경우에만 실시
- =>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검증에 한계
- 한국어초급 수준의 필기시험을 통해 국적 취득
 - => 한국어 외 우리 사회·제도·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부재



3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시스템 미흡

- 부처별로 이민자를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민자들의 참여와 관심 저조
 - 전체 등록외국인의 1.6%, 결혼이민자의 10.5%만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도입배경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 등의 사회적응 및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환경 조성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



Ⅲ.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개요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이민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한국어, 우리사회이해 등 정착지원 시책을 표준화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시 필기시험을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통해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I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계획



이수제 추진계획



국적취득과 연계

- '09.1.1 : 모든 귀화신청자는 귀화필기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중에서 선택(결혼이민자가 우선대상)
- '10.1.1 : 모든 귀화신청자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

영주권 등과 연계

- 영주자격 취득 희망자에게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영주자격 부여를 점진적 검토

기타 난민인정자, 장기체류자 등과 연계

-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적응이 필요한 난민인정 대상자, 장기체류자에게도 적용 또는 자격변경시 연계적용



V.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세부내용

- 1 이수제 구성체계
- 2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방법
- 3 이수제 과정 구성
- 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종합평가
- 5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절차
- 6 운영기관 지정 및 절차
- 7 이수제 신청자 학적 관리
- 8 강사 및 이수제 과정 인정 등



1

이수제 구성체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구성

- ? 기본소양 사전평가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 + ? 종합평가

☉ 기본소양 사전평가

- 신청자에 대한 사전평가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이수시간 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

- 뒤의 이수제 과정구성에서 세부설명

☉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최종평가
- 방법 : 전문평가시험(KINAT): 현재 개발 중



2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방법

☉ 기본소양 사전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신청자의 기본실력 측정
-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레벨 및 이수시간 배정

☉ 시험구성 및 평가방법

- 전화인터뷰를 통한 구술시험 + 필기시험 혼합방식

☉ 세부내용

-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 신청자는 재단 전용전화에 접속하여 평가위원과 통화/응시
- 구술시험 녹음 및 지정 지문 필기시험 동시실시
- 평가결과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레벨 통보

※ 점수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3

이수제 과정 구성

| 이수단계 | SI-0 | SI-1 | SI-2 | SI-3 | SI-4 | SI-5 | SI-6 | SI-7 | SI-8 | |
|-----------------|-----------------|-------|--------------|--------------|--------------|-------|-------|-------|--------|------|
| 한국어 | 한국어0 | 한국어1 | 한국어2 | 한국어3 | 한국어4 | 한국어5 | 한국어6 | 한국어7 | - | |
| 이수시간 (단위:시간)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 |
| 과목 | 우리사회이해 | - | 기초생활 현장방문 | 기초생활 현장체험 | 기초생활 현장참여 | - | - | - | - | 일반강좌 |
| | 이수시간 (단위:시간) | - | 10 | 10 | 10 | - | - | - | - | 20 |
| 이수기간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2개월 | |
| 사전평가 점수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79 | 80~100 | |
| 대상자 | 결혼이민자 | | | | | | | | | 공통 |
| | 일반 이수자 | | | | | | | | | |

- 결혼이민 이수자는 SI-0 ~ SI-3 이후 SI-8 단계로 감

- 기타 일반 이수자는 SI-0 ~ SI-8 단계로 이어짐

단, 일반 이수자중 SI-4 ~ SI-7 해당자는 해당 단계에서 SI-8 단계를 동시이수 가능

※ 'SI' 는 Social Integration 의 약자임



한국어 과정

- 한국어-0 ~ 한국어-7 까지 8단계 레벨로 구성

- 상급(2개 과정)과 고급(1개 과정)을 두어 한국어과정의 폭을 넓힘

우리사회이해 과정

결혼이민자 및 일반 이수자 모두 "기초생활 현장방문", "기초생활 현장체험", "기초생활 현장참여", "일반강좌" 등 4단계 로 구성

-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다른 문화 이해, 인권과 복지, 행정제도
- 한국의 역사, 국내체류와 국적, 직업훈련과 노동, 자녀교육과 학교체계
- 건강과 의료, 일상생활 관련법률, 주거복지와 부동산, 평화와 공존
- 한국어 능력향상 정보, 한국의 문화와 종교, 정치형태와 민주주의
- 한글의 유래와 특성,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관광과 여가문화
- 한국의 자연과 생태, 공동생활 등



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종합평가

기본방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 과정에 대한 성취도 평가
- 시험의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전체 과정 포함

평가방법

- 시험제도 연구/개발 중
- CBT 기반의 시험방식으로 한국어와 우리사회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KINAT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 KINAT(Korea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중임



5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대상

- 기본 : 결혼이민자(남편 등 가족에 대하여도 희망자에 한해 허용검토)
- '10.1.1. 이후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
- ※ 영주권신청자, 유학생, 근로자 등에게도 점진적 의무화 도입 예정

신청절차

| | |
|------|--|
| 신청 | • 신청자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이수신청 |
| 사전평가 | • 신청접수 후 관할 출입국에서 사전평가 실시 • 레벨 및 이수시간 배정, 가까운 운영기관 안내 |
| 등록 | • 가까운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이수신청자 등록 |
| 이수 | • 배정받은 과정 및 시간 이수 및 이수확인서 발급 |
| 평가 | • 이수 후 최종 평가 및 점수표 발급 |
| 귀화접수 | • 이수확인서 및 점수표를 구비하여 귀화접수 |



6

운영기관 지정 및 절차

운영기관 지정

- 신청 → 심사 → 법무부장관의 지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 기타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를 위한 각종 행사주관

취소절차

- 지정 취소 기준에 따라 운영기관 취소 조치
-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30일내)
- 재지정 보류
 - 지정 취소된 운영기관은 3년내 재지정 보류

운영기관 지정절차

| | |
|------|---|
| 신청 | · 관할 출입국에 지정 신청 |
| 사실확인 | · 신청접수 출입국에서 신청사실 확인 · 조건 미비 시 보완요구(10일 이내 보완) |
| 보고 | · 각 소장은 사실확인 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보고 |
| 결정 | · 법무부장관은 지정여부 결정 |
| 지정 | · 지정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운영기관 지정기준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 |
| - 공통 사항 | 한국어와 우리사회이해 과정 동시 운영(필수) 기본 교육계획 수립(필수) 1인 이상 충분한 강사의 상시 확보(필수) 지정된 교재의 사용(필수) |
| - 한국어 과정 | 주당 최소 12시간이상 편성 |
| - 우리사회이해 과정 | 주당 최소 4시간이상 편성 한국문화, 요리감습 등 참여프로그램 교육 계획 수립 과정 개설시 1인 이상 충분한 강사의 수시 확보 |
| □ 운영기관 시설 | |
| - 교육시설 환경 |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 확보(필수)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필수) 교육시설 환경의 청결도 유지 과정 이수자의 유아를 위한 수유 또는 휴게 공간 마련 |
| - 교육시설 안전 | 재난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필수)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대처방안 마련 |
| - 교육시설 운영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원거리 거주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
| - 학사관리 |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필수) |



이수신청자 학적 관리

기본적 학적 사항

- 운영기관은 이수신청자에 대한 등록, 출결사항, 성적 등 관리

세부절차



※ 금년도 하반기에 학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예정,
'09년 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학적관리 가능



강사 및 과정 인정 등

한국어 강사

- 기존 활용강사를 자격 및 경력 등 고려하여 강사 허용

우리사회 이해 강사

- 법무부와 한국어주민재단에서 실시한 「우리사회이해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배치

한국어 과정

- 기존 각 운영기관 한국어과정을 검증과정을 통해 과정 및 레벨 지정

우리사회 이해 과정

- 법무부와 한국어주민재단의 "우리사회이해 과정"으로 일원화

한국어 교재

- 기존 사용중인 교재를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정

우리사회 이해 교재

- 한국어주민재단에서 발행·보급하는 교재로 일원화(유료)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02-500-9151

